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4. 1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재정국장 진정래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별표(수수료)개정(2017.12.21)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.(안 별표 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(수수료) 개정(2017.12.21)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 파일란에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 하는 것으로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정보공개 처리시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, 정보 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함 (안 별표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2.22. ~ 3.14. /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〉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(제3조 관련)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 란

공개 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전자 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<별표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(제3조 관련)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란		<별표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(제3조 관련)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란	
공개 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	공개 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전자 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	전자 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